

의안  
번호

4560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경 제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옥 화

의안 번호	4560
----------	------

## 의안검토보고서

- 발의 또는 제출자: 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 건명: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전요지: 별첨
- 검토의견: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류옥화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6년 3월 9일 설재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 1. 개정이유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들이 겪는 각종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 범죄 피해 예방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가. 실태조사에서 각종 범죄 피해사례를 반영한 조사 항목 확대(안 제6조제1항)
- 나.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안 제7조제1항 제6호)
- 다. 참고사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sup>1)</sup>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sup>2)</sup>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들이 겪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의 조사항목에 “각종 범죄 피해사례”를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범죄 예방 지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제7조제1항에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범죄 피해 예방 지원사업” 신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 범위 내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함
- 본 개정안은 기존 조항을 현실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시하였으며,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